

# 이달의 민변

97년 3월호

특집 한보사태

자료 안기부법 국제심포지움 발표문  
과거청산 사업을 국민운동으로

## 이달의 민변

97년 3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차례

## 변 모 유흥 10

호 168

권두언 각자에게 그의 것을! - 송두환 • 4

## 특집

한보사태 한보사태의 본질과 대응방안 - 최승수 • 8

한보사건: 한국적 부정부폐의 전형 - 이은영 • 12

한보사건은 부폐방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 강경근 • 16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서 • 21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공개서한 • 24

한보 관련 정보공개청구 • 28

위원회 소개 국제연대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현황 소개 • 33

회원의 변론경험담 변명의무를 이행하며 - 신현호 • 37

나의 유학기 시애틀의 잠 못이루는 밤 - 정미화 • 40

민변회원계 언제나 진리값이 'T'인 인생이라는 명제 - 변우성 • 48

피고인석에서 본 민변 간첩 아닌 간첩으로 연행되어 - 박충렬 • 52

노동판례모니터링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 김도형 • 56

판례평석 시위참가학생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례에 대하여 - 조광희 • 59

사무국 보고 • 155

음모나호법 향후 풀려나주면

## 자료1 안기부법 국제심포지움 발표문

①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통제의 현황과 과제 - 박연철 • 64

② 안기부 권리 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 - 속노현 • 70

③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쿠차 • 80

④ 독일정보기관 '헌법보호청'의 폐해와 문제점 - 롤프 피스너 • 85

⑤ '국가 속의 국가' 구동독의 슈타지 체제: 해체와 전망 - 롤프 피스너 • 92

⑥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

증거를 위한 투쟁 - 키트 케이지 • 98

⑦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 - 그레고리 노침 • 106

## 자료2 ① 좌담: 북한동포돕기,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 114

② 과거청산 사업을 국민운동으로 - 박래운 • 123

③ 6월 민주항쟁 10주년 사업의 의의와 목표 - 황인성 • 127

④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여기에 서있다 - 유흥옥 • 131

⑤ 교사 공무원 단결권,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유상덕 • 134

⑥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증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140

⑦ 국가보안법 무죄판결문 • 143

⑧ 전자주민카드 관련 정보공개청구 • 149

⑨ 날치기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회신) 촉구 • 152

## 성명서 김영삼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담화에 대한 논평 • 158

## 각자에게 그의 것을!

송 두 환

중소기업체 사장이라는 어느 용맹한 시민이 “권력은 구속영장에서 나온다”는 경구를 구사하며 “부패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수뇌부와 다수의 검사들을 해고한다”고 선언하는 광고를 수개 일간지에 게재하여 온통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위 광고문을 읽고서 구속영장이 총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통찰에 감탄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재미있는 것은 위 광고를 게재한 시민이 구속영장을 법원의 것이 아니고 검찰의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년 초부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제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구속영장을 경찰이 발부하는 것으로 아는 시민까지도 상당수 있었고, 심지어는 신문기자까지 그렇게 알고서 쓴 기사도 더러 있었으니, 위 대목을 가지고 위 광고를 탓할 수는 없겠다.

중요한 것은, 본래 국민의 것이고 마땅히 국민의 것이어야 할 국민의 검찰을 마피아에게(?) 빼앗겨버린 국민의 울분과 분노를 한 시민이 위 광고로써 대변하였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계속하여, 이번에는 전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이 안기부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권력 측근의 어떤 사인에게 사적 채널로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고위직 인사 및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의혹과 함께, 실은 그뿐만 아니라 다른 안기부 간부 역시 사적 채널로 안기부 보유의 주요 정보를 어느 대권 주자 진영에 유출시켜 왔다는 보도가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안기부가 직무상 수집 보유하는 정보는 본래 국민의 것이고, 안기부 내외를 막론하고 특정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기부의 독점적 관리에 맡기고 있었던 것은 그것이 일반에게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등을 해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느 개인에게 특혜적으로 제공, 유출되었다는 것이니, 본래 국민의 것인 공공정보가 본래의 주인인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도둑맞고 있었던 것이다.

공공정보 얘기가 나왔으니 위에서 본 용맹한 시민의 어조를 빌려 한마디 밀다면, 실은 권력은 정보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현대의 정보화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과거 춘추전국시대의 모든 정치, 군사 전략가들도 상대진영, 또는 상대국가의 지리, 물산, 인물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략을 수립하며 지휘지기에 진력하였던 데서도 분명하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정보에의 접근이 불허된 상태에서 권리가 나올 리 없고, 제대로 된 주권행사가 가능할 리 없

다. 그렇다면 권력이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는 마땅히 국민의 것으로서 국민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랜 권위주의적 통치의 유산으로 비밀주의의 타성에 젖어, 스포츠, 오락, 연예 등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극력 기피하는 중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정보’는 물론 ‘통일, 통상, 재정, 금융관계 등의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열거하고 있고, 그에 의하면 국정의 전 분야가 망라되어 있어 과연 어떤 행정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는 바, 이와 같이 된 것은 법시안에 대한 정부네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가 너도나도 자기 부처 관련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 결과라 한다.

위와 같은 법의 성안 및 입법과정을 지켜보고서 한가지 더 생각나는 것은 입법권은 본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것인데도, 행정부 관료조직이 사실상의 입법권한을 휘두르고 있고, 국회는 단순히 졸속 또는 날치기식 법안 통과의 경로로 전락하여 버렸다는 것이다.

이쯤에 이르고 보니, 필자가 범철학 교과서를 뒤적이던 시절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난해한 문제에 대하여 견해 중 하나로 ‘각자에게 그의 것을’ (suum cuique)이라는 문구를 읽고서 매우 그럴듯하게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 의미를 손에 움켜잡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진리를 깨뚫는 촌철의 경구임을 알 것 같다.

정의란 결국, 사람과 사물이 각자 제것, 제자리를 찾아서 있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 구성원 또는 기관이 각자 자기의 것, 자기의 본분,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본래 국민의 것인 검찰이 국민의 것으로 자리하여 있었다면 용맹한 시민이 광고로써 분격을 토해내야 하는 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본래 국민의 것인 공공적 정보가 국민공공의 것으로 자리잡아 있었더라면 전 안기부차장의 불법적, 특혜적인 정보유출의 범죄 또한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이 주창, 시행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란 본래 법원의 것인 구속영장 발부권한을 법원이 되찾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검찰이 겨우 되돌려 받았던 본래 검찰의 것, 즉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법 개정안의 날치기통과로 다시 안기부에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잠자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튼 이제 남은 것은, 본래 국민의 것인 검찰을 국민의 것으로서 되찾고, 본래 검찰의 것인 수사권을 검찰이 되찾고, 본래 국회의 것인 입법권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본래 국민의 것인 공공정보를 마땅히 국민의 것으로 자리잡게 하는 등, 각자에게 그의 것을 되돌려주고, 또한 각자가 그의 것을 회복하는 노력에 나서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사회는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卷之三

특집

## 한국을 그려줄뿐인 역사서

## 한보사태

## 한보사태의 본질과 대응방안

최승수

### 1. 들어가는 말

구치소에서 정태수 씨는 요즈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을까. 정치인들 돈 먹여 보았자 말짱 헛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되씹으며 정말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수서사건 때처럼 이번도 또 유야무야되길 빌면서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고 있거나 않을까. 정태수 씨로부터 돈을 먹었으나 검찰수사에서 비켜나간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황장엽의 망명과 이한영의 피격에 만세를 불렀을까.

8

이  
달  
의  
민  
변  
·  
3  
월  
호

기대도 안했지만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또 한번 우리를 절망케 하였다. 도대체 이 더러운 한국사회의 부패고리를 끊어줄 자 누구인가. 저 장막 뒤에서 웃음짓는 검은 무리에 대하여 철퇴를 가할 날은 올 것인가. 한보사태와 그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보면서 나는 분노와 절망을 넘어서 비장한 마음이 든다.

### 2. 한보사태의 본질과 그 대응방안

한보사태는 한국사회의 부폐구조의 집약점이자 정

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의 한국사회를 지탱하여 주었던 위 부폐구조는 한보사태를 통하여 그 스스로의 한계를 노정한 것이며, 위 부폐구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21세기 한국사회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생각된다.

#### 가. 청경유착의 문제

한보사태는 우리 사회 발전의 대표적인 결림돌인 청경유착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보는 노태우정권 당시 수서사건으로 위기를 맞은 듯하였으나 의연히 재기하여 문민정부 수립 이후 급성장하였던 대표적인 부폐기업이다. 정태수 씨의 사업확장 스타일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막대한 로비자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보다 몇 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구조에 입각하고 있다. 문민정부 이후 한보가 급 성장한 배경이 92년도 대선자금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후 사업확장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문제의 해결은 정치인, 관료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선자금은 차치하고서라도 각종 사업인허가를 둘러싼 관료들의 비리에 대하여 하등 이렇다 할 수사를 한 것도 없이, 한보사태를

정태수 씨와 몇몇 부폐한 정치인 및 은행장 간의대출특혜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감하였다. 은행대출 건만 해도 그렇다. 몇조원이 넘는 은행대출에 있어서 깃털에 불과한 홍인길 의원등이 이를 가능케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믿어 달라고 하는 검찰의 태도는 정말 처연하기까지 하며 이에 우리도 그말을 믿어주고 싶은 심정이다. 김현철 씨에 대한 수사에 이르면 더욱 더 참담한 심정에 빠지게 된다. 문민정부 수립 이래 중요한 국정사를 김현철 씨가 좌지우지하였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성역없이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공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검찰의 저력에 대하여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이다.

청경유착의 근절 문제는 우리사회 발전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정당한 자본의 논리와 건전한 근로의식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전해나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진 개발독재의 유산인 청경유착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21세기는 암울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한보에서 포착된 청경유착의 비리는 꼭 밝혀져 비리주범들이 처단되어야만 한다. 이에 대하여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한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거론된 정치인들 속칭 정태수리스트, 홍인길리스트의 공개를 촉구하여 그 관련 국회의원등의 형사처벌과 징계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경유착의 또 다른 주범인 정태수 일가에 대하여 엄격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정태수 씨와 검찰이 어떠한 타협을 하였는지 몰라도 정보근 씨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청경유착의 주범이 다시는 이땅에 빨붙이지 못하도록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5천만원이 떡값에 불과하다느니 뉴스거리도 안된다느니 하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정치자금을 공개하고 그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폐방지

법, 돈세탁방지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

#### 나. 재벌지배구조혁파의 문제

한국사회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하여는 논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족벌경제체계가 가져오는 폐해,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남는다는 논리, 경제적 합리성없이 재벌총수의 전횡에 따라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행태들은 이번 한보사태를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재벌총수 1인에게 근로자와 중소기업, 주주, 은행 등 채권자뿐만 아니라 국민경제가 불모로 잡혀있게 되고 이는 청경유착과 이어져 정치 민주화의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벌의 총수 또는 족벌지배체계를 해체하고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청경유착의 여지를 차단하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재벌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는 다양한 민주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다. 감독기관의 부실감독문제

한보사태와 관련하여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간 부분으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재경원 등 감독기관의 감독권한 행사의 적정성이 있다. 감사원이 한보에 대한 사업인허가와 관련하여 관련부처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전혀 의혹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은행감독원이 이미 1996. 12. 초경 한보의 자금사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 12. 말경부터 1997. 1. 중순까지 무려 3,600억원의 구제금융자를 수수방관한 점, 한보철강은 지난 1997. 1. 20. 부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감독원이 금융결제원에 부도처리를 유보할 것을 지시, 부도어음이 3일 동안 미처리 상태로 금융결제원에 보관된 점 등

감독기관과 한보 사이에 모종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독관한이 적정하게 행사되었는지, 직무유기의 점은 없었는지, 감독에 있어서 제도적인 허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라. 금융기관의 부실대출방지 문제

근래 들어 부정대출로 구속된 은행장이 얼마나 많은가. 외국에서는 한국의 시중은행에 대한 신용도가 급전직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부폐 기업주에게는 담보도 없이 몇천억원이 대출되는 데 반하여 중소기업자나 일반 서민에게는 은행문이 너무나 높기만 하다.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 제도적으로는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한 특혜대출 내지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요구되고, 또 은행 경영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실화된 은행은 과감히 정리되어야 금융시장 개방에 있어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실대출을 해준 은행장이나 은행 경영진은 그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한보에게 특혜대출의 물꼬를 터준 전현직 산업은행 총재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마. 특별검사제 도입문제

우리는 이번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보면 서 특별검사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의 제도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특별검사제란,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관련자들인 고위 행정관료들을 수사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법무성 관료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의 범죄를 수

사하고 소추함에 있어서 생기는 이익충돌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더 돌아볼 필요도 없이 최근의 정치적 사건이나 대형 부정비리 사건에 있어서 보여준 검찰의 무력함에 우리는 검찰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촉구할 것도 솔직히 없지 아니한가. 이번 한보사태야말로 바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3. 민변의 활동방향

##### 가.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하여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재경원 기타 정부기관이 한보의 사업인허가와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다.

##### 나.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정치인들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형사고발이 필요하다. 검찰이 제시한 5,000만원 기준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소한 중여세 포탈혐의를 근거로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국회에 관련의원에 대한 정계를 요구한다.

##### 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획소송 제기

(1) 제일은행등 부실대출로 손해를 본 은행들의 소액주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은행경영진과 부실대출에 의암을 행사한 자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의 제기.

(2) 제일은행등 부실대출과 관련하여 투자한 소액주주 중 주식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이사등 경영진에 대하여 직접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손해배

상청구소송(상법 제401조), 또는 직접 부실대출에 압력을 행사한 자들을 상대로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3) 금융결제원이 한보의 부도공시를 지체한 것으로 인하여 그 사이에 한보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이 관련 은행 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4) 한보 관련 중소기업등이 회사채권자 입장에서 한보경영에 관련한 정태수 씨 일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라. 제도적 개선과 관련하여

(1) 정경유착의 방지를 위하여 정치자금 개정, 부폐방지법, 돈세탁방지법 등 입법청원운동

(2) 검찰 중립성 확보방안 마련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운동

(3) 은행장 선임시 정치권의 관여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편집자 주: 이 자료는 참여민주연대시민사회와 한겨레신문 주최로

1997년 2월 19일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보사태 관련 심포지움 「권력형 부정부패, 검은돈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의 주제문이다.

## 한보사건; 한국적 부정부패의 전형

이 은 영(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 1. 머릿말

한보 특혜대출사건은 문민정부의 권력부패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국민들은 한국적 부정부폐사건의 전형인 한보사건으로 온 나라가 뒤흔들리고 있음을 개탄하고, 이대로 부정부폐가 방치된다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폐를 근본에서부터 뿌리뽑아야 한다는 각오 아래 이번 한보사건을 분석해 보고 부폐추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한보사건의 개요

한보그룹이 1997년 1월 23일 부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당진제철소의 건설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4조9천5백억원을 융자받았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한보그룹에 대한 대출은 금융기관의 대출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뇌물과 외부압력에 의한 부당대출이었다. 당진제철소 건설투자비가 공사 진행과정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보그룹이 약 5조원의 금융권 대출금

중 일부를 위장계열사 등을 통해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돈은 대출명목과는 먼 그룹 사업의 확장에 사용되었으며, 그 돈중 상당한 금액이 정치권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지출되었다.

### 3. 한보사건에 나타난 부폐의 특성

한보특혜대출사건은 우리나라 권력형 부정부폐 사건의 표본이다. 이 사건은 현정권의 핵심세력을 이루고 있는 국회의원, 행정부 고위관료들이 그들의 권력을 악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부폐사건이다. 사법부를 제외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층들이 금융기관에 권리의 힘을 과시하여 금융의 원칙을 무시한 특혜대출을 반도록 하였다.

부폐사건의 불완전한 해결은 부폐를 온존시키는 온상의 역할을 한다. 부폐방지를 위해 아무리 좋은 법률과 기구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실제 부폐사건에 임해서 그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것이 될 것이다. 검찰은 한보사건의 수사를 통해 부폐네트워크를 뿌리째 제거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부폐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 4. 부폐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

부폐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필연적 사회악은 아니다. 좀더 효과적인 부폐방지책을 세워 실행에 옮김으로써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맑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한보특혜대출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폐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1) 부정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부정한 행위를 하면 언젠가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 받게 되는 필연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대개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 현재 뇌물받은 공직자나 뇌물 준 기업인으로서 처벌되는 사람들을 국민들은 '참 재수없게 걸렸구나' '누구에게 박게 보였을까' 하는 시각으로 바라본다. 처벌의 우연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부폐가 근절되지 않을 것은 뻔하다.

첫째, 부정행위를 세분하여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형벌(刑罰)을 강화하고 가중처벌, 누범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셋째, 실제로 범법자가 느끼는 법의 무게가 커야 한다. 현재 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보면 부정행위자가 빠져나갈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단계별로 보면 적발될 확률이 낮고, 기소될 확률이 낮고,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낮으며, 형집행에서 병보석되거나 사면될 확률이 높다. 넷째,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행위의 공소시효도 충분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범죄수익은 철저히 몰수되어야 한다.

#### (2) 돈세탁이 허용되는 한 부폐는 사라지지 않는다

돈세탁이란 '불법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금융기관 등을 통해 합법적인 자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돈세탁을 금지해야 공무원의 부폐를 막을 수 있다. 기업이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는 것과 공무원이 그 돈을 받아 은닉해 두는 것이 금융거래의 투명화로 인해 불가능하게 된다면 부폐는 줄어 들게 된다.

우리나라 금융실명제에는 돈세탁금지가 빠져 있다. 돈세탁금지조항이 없는 금융실명제는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의 부폐방지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① 불법재산의 은닉을 금지한다. 범죄(뇌물수수, 탈세, 마약밀매 등)에서 얻은 재산을 금융거래를 통해 은닉하거나 위장해서는 안된다(법안 제54조). 이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안 제58조1항).

② 금융기관에 보고의무를 부과한다. 금융기관의 직원은 금융거래가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들면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법안 제55조).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안 제59조1항).

③ 고액의 금융거래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과한다. 금융기관은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관해서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통고해야 한다. 누구든지 이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현금을 분산하여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된다(법안 제56조).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안 제60조).

공익제보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첫째, 조사기관은 공익제보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된다. 둘째, 조사기관은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신변의 안전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셋째, 공직자는 공의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고, 징직, 감봉, 전보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 부폐방지기본법을 제정하자.

부폐방지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행위를 총체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일이다. 시민들이 법제정을 위해 서명한다는 것은 부폐추방을 향한 시민의 힘을 모아 만천하에 표시하는 작업이다. 시민의 힘은 정치인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시민의 힘에 의해 법제정을 이루어낼 것이다. 행정부는 시민의 요청을 따라 남아 있는 부폐요인들을 말끔히 청소하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법의 부폐방지기본법안은 기존의 법률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직접적인 규제효과를 높이도록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현재의 「공직자윤리법」「형법」의 공무원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규정」「특정 범죄가 중처벌에 관한 법률」등에서 부폐방지에 관한 규정들을 추출하고 새로운 규정들을 추가하여 만들어졌다. 이 법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부폐에 관해 전면적으로 대응한다. 2)공직자윤리법의 맹점을 없앤다. 3)공의정보제공자를 보호한다. 4)돈세탁행위를 처벌한다. 5)부정행위를 가중처벌한다. 6)부폐사정기관의 기능을 강화한다.

#### 정책적 대안

우리 사회에서 뿌리깊은 부폐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부폐방지법의 제정과 부폐방지기구의 정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폐추방의 의지를 다짐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폐방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장기적 방안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해나간다.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부폐방지책을 통해 한두번 부폐공무원을 징계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공무원들은 그 일시적인

비리를 피하기 위해 엎드려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부폐방지책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부폐방지제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운영되며 정치적인 비호세력이 없다는 확신이 국민들에게 둘도록 운영의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정치적 배경 없는 사람만이 적발된다는 편중 인상이 들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적발된 범법자가 그 처벌에 승복하게 된다. 넷째,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은 단호히 처벌하여야 한다. 부정행위를 적발하고도 기소하지 않거나, 처벌하지 않거나, 실형을 선고하고 나서 사면하는 등 온정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거듭하고 싶은 유혹에 들게 만들 뿐이다. 다섯째, 부폐의 소지가 있는 업무를 상호분리하여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적인 감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

#### 5. 맺음말

한보사건은 현정부에 누적된 부폐요인이 한꺼번에 터진 대형 부폐사건이다. 이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보사건은 권력네트워크형 부폐에 해당한다. 상호권력의 견제를 통해서 부폐를 막도록 마련된 입법부와 행정부가 오히려 서로 공모해서 부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집권당의 독주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할 야당국회의원조차 부폐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견제기능이 마비되었음을 말해준다.

둘째, 한보사건은 정경유착형 부폐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한보그룹은 철강산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대규모성을 이용하여 정관계에 불법로비를 통해 대출을 받고 이 중 상당부분을 철강사업 이외의 용도로 배돌렸다. 다른 한편 정치권력은 은행에 대한 압력을 통해 정치자금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정권유지와 정권재창출을 도모하려 했다.

셋째, 한보사건의 부폐유형은 불법후원형, 불법거

래형 부폐이다. 한보사건에서 은행장들의 대출비리는 뇌물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특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불법거래형 부폐'에 해당하고, 국회의원이나 장관의 대출압력은 공직자가 공직업무를 처리할 때 특정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수단을 동원하는 '불법후원형 부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한보사건과 같은 대형부폐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라도 근본적인 부폐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한보사태 심포지움 자료 - 참여연대 주최

## 한보사건은 부패방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강 경근(승실대 법대 교수)

### I. 轉賣貸出 커넥션과 腐敗防止法의 必要性

1. 한보사건의 핵심은 腐敗한 外壓者를 찾아내는 것이다

지난 1월 23일 한보부도로 불거지기 시작하여 우리 공동체에 千波萬波의 정치·경제적 공황을 가져온 한보커넥션은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개혁이 砂上의 樓閣으로 의해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한보사건의 핵심은 누가 수조원의 은행 대출이(정상적인 아닌 방법을 통하여) 가능토록 외압을 넣었는가 즉 은행에 외압을 행사한 실체를 캐내는 것이다. 그와는 별도로 한보의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도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동아일보, 1997. 2. 12. 수, 3면) 한다는 것이다. 한보사태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식도 핵심권력자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으리라는 점을 지적함에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한보에 기생한 腐敗公職者들의) 그 핵심 배후를 밝혀낼 수 있는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다(한겨레, 1997. 2. 10. 월, 3면). 그리하여, 신한국당의 한 중진의원도, “검찰은 한보사태의 수사를 성역 없이 진행해 비리에 연루된 사람에게 형사적 책임을

### 2. 檢察은 國民의 期待에 未洽했다는 개衆論이다

권력핵심이 연루된 현정부 최대의 정치적 사건으로 온 나라를 빌자 뒤집어 놓았던 한보의혹사건은 현직 장관 1명과 현역 국회의원 4명, 은행장 3명이 구속되는 선에서 검사의 손에서는 사실상 끝을 맷게 됐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그동안 증폭된 의혹을 규명하기에 크게 미흡하고 사법처리에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핵심인 대출외압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수사는 정부 내 부패 연루자를 가리는 소위 한보리스트와 각종 인허가에 얹힌 흑막은 가려내지 못하였으며, 비자금 1350억원 가량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최종 유입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처리에 관련하여 검찰이, 특히드 의혹을 파헤치면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수상을 구속·기소 한 일본의 동경지검 특수부와 같은 명망을 얻는가, 아니면 형사적인 실체적 진실을 이루어내지 못하여汚名이랄 수 있는 ‘정치검찰’에 머무르느냐는 오로지

검찰의 뜻인 것이다.

### 3. 正當한 對價가 아닌 모든 財貨를 腐敗로 보아 처벌할 수 있어야 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에 심정적으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꼭 망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관심이나 갖습니까?” 온통 한보와 고위층의 검은 거래에 관심을 쏟을 뿐 그들에 의해 등이 터져나가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언론과 정부의 태도를 괴롭히며 정사장은(하청업체 정진기업 정세근) 이렇게 내뱉듯이 말했다. 한가닥 희망을 부둥켜 안고 돼지우리에서 벼티는 이들은(품삯 못 받은 당진제철소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들) 갈 곳이 없어진다. 단지 그들이 술기운을 빌려 내뱉는 절망만이 당진의 하늘을 맴돈다. “돈 쳐먹고 비리 저지른 놈들은 모를 겁니다. 몇 놈의 비리가 수천 수만의 사람들 눈에서 이렇게 피눈물을 쥐어 짜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한겨레, 1997. 2. 12. 수, 11면).

이렇게 맷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조원이라는 돈을 부실기업에 대출해주고 그 과정에 개입해서 ‘썩값’ 챙긴 행위가 부정 부패가 아니라 ‘깃털’의 휘날림이며 그것을 밝혀보자는 일을 보고 ‘음모’라고 한다. 한마디로 그것이 ‘썩값’ 이든 ‘뇌물’ 이든 모두 똑같이 腐敗行爲로서 처벌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4. 그래서 腐敗防止法이 要求되는 것이다

한보 사건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은 (그 돈을) 받을 당시 청탁의 뜻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일반적인 상식을 넘는 돈을 받았을 경우 뇌물성을 떠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어 뇌물죄를 포괄적으로

해석·적용해야(한겨레, 1997. 2. 10. 월, 3면) 한다는 입장 역시 그 당시의 국민 法感情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한 시도 역시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원리에 어긋날 가능성이 많다. 자칫 그러한 기준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적 공감 대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판단자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할 경우 그 意志性이 문제될 뿐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없지 않은 것이다.

2월 11일 金起秀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과 관련, “5천만원을 받은 것이 무슨 큰 기사냐. 범죄행위가 있으면 조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한 것(동아일보, 1997. 2. 12. 수, 3면)은 고위 공직자 내지 정치인의 부패에 대한 인식의 한 면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말이다. 李壽成 국무총리는 2월 11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직자가 법률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적 도덕적으로 져야할 책임은 그에 못지 않게 큰 것”(동아일보, 1997. 2. 12. 수, 1면)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얘기대로 부정부패를 칙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암담해지는 만큼 한보의 모든 흑막을 규명케 하고 모든 부처와 금융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경위를 조사한 종합백서를 만들게(한국일보, 1997. 2. 12. 수, 3면 사설) 한다면, 이에 더하여 부패방지법 제정도 필수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 5. 高位公職者의 行為에 대한 道德的·政治的 裁量領域은 줄여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영역을 정치적인 타협이나 개인의 도덕적 차원에 맡겨 놓을 수 없음이 드러났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규범적인 구속을 하여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과 도덕의 가장 큰 구별 기준은 강제성이다. 處罰 규정이 포함되는 강제규범들에 의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움트고 있는 부패의 벼슬을 잘라내고 규제해야 할 때인 것이다. 형법의

범주나 기타 정치자금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다행히 처벌하는 조항만 없으면 형사 면책될 뿐만 아니라 그 러한 것들에 대한 도의적廉恥도 느끼지 못하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불감증을 이번에야 말로 불식할 때이다.

비록 형사법규에는 저촉되지 않아서 전형적인 범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법으로서의 腐敗防止法에는 당연히 포함되는 부정행위임을 인식케 하여 정치인 내지 고위공직자의 没廉恥를 도덕심의 위배라는 차원에서 불법적 행위인 부폐에 해당시켜 응분의 법적 대가를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나 눈을 둘려 한번 시민들의 일상사에 관하여 보자. 예를 들어서 輕犯罪處罰法에서 벌하고 있는 무려 54가지의 경범 행위들 중에서는,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5호)',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9호)', '...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제주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10호)', '... 다른 사람을 속 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11호)',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 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12호)',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19호, 단체가입 강제)',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23호)',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24호, 불안감조성)', '... 새치기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8호)', '...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51호)',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52호)' 등을 벌하는 등庶民들의 거의 모든 일상사에 걸쳐서 법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에 대한 '거의 모

든 日常事'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우리 법 체계의 전반에 비추어 봐서도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며 부적절 하지도 아니한 것이다.

## II. 腐敗防止法은 時代的 要求이다

### 1. 腐敗 '行爲'에 대한認識이擴散되어야 한다

'부폐'라는 말이 현법이나 법률상 용어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범주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의 확산이 요구된다. 예컨대, 부폐란 일련의 법 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이 公益(public interest)追求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회문화적 규범과 법제도를 위반하거나 일탈하는 행정현상이라고 하든지 하는 것이다.

### 2. 현행處罰法制는 散漫하다

공직자가 부정부폐에 관한 정언규범으로서의 公務員倫理憲章(1980. 12. 29. 대통령훈령 제44호)은 추상적 선언규정이며, 이의 實踐綱領(1982. 11. 1. 국무총리훈령 180호) 역시 이권불개입, 청렴정신 등의 선언적 규정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5조도 공무원이 취임할 때 부정발본에 앞장선다는 선서 규정만 있으며 이는 公務員服務規程(1983. 3.)이라든지 公務員懲戒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國家公務員法(1991. 5. 31. 법 4384호)은 기본적으로 부폐방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일반직 공무원 외에 법관, 검사, 군인, 대통령, 국회의원 기타 고용직 등이 모두 포함(법 2조)된다)에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 확립과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

이며 능률적인 운영(법 1조)을 목적으로 하는,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公務員 保護 法이지 공무원책무법은 아니다.

공직자 부정을 처벌하는 근거법인 刑法(1988. 12. 31. 법 4040호)은 제2편(각칙)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9조는 收賂罪를 규정하는 바,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대판 1992. 12. 92도1762)이 포함된다. 이밖에 사전수뢰죄(형 129조 2항), 제3자뇌물제공죄(형 130조), 수뢰후부정처사죄(형 131조 2, 3항), 알선수뢰죄(형 132조), 중뇌물전달죄(형 133조)가 있고, 그 범인 또는 情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供할 금품은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價額을 추징(형 134조)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횡령·배임 등 '공무원직무에 관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형 135조)하므로, 橫領·背任罪(형 355-361조)에 의하여 취득한 불법수익등이라든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또는 그것을 이용하여 불법이득등을 취하였을 경우의 처벌도 부폐법제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서 행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公益情報 를 이용하여 수익을 취한 경우(예컨대 명확한 범죄 성립은 되지 않으나 공무원 致富의 전형적인 예이다)에도 몰수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폐방지법제가 있어야 한다.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관한法律(1990. 12. 31. 법 4291호)은 뇌물죄의 가중처벌(법 2조)을 규정하며 転旋收賂罪도 가중처벌(법 3조)되도록 하며 뇌물죄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도 공무원으로 본다(법 4조1항).

## III. 그래서 腐敗防止法은 制定되어야 한다

제로 베이스(原點)에서 檢討해야 한다

공무원 부정행위에 대한 우리 現行 예방법 및 처벌법體系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것만이라도 지켜진다면 부정방지 및 최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공직자 부정행위는 속속 이어져 이제 한 보커넥션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投機的(발각되면 징역을 감수하겠다든지 또는 발각되지 않으리란 확신에서), 構造的(같은 직장에 있는 공직자의 공모나 방기 등) 不正일 뿐 아니라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최결의지부터 저하되어 있다. 個別의 부정방지법 체계로서는 공직자 부정을 잡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정치자금이니 등등의 말로 호도할 수는 없다. 이제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부정방지법 체계는 포기하여야 한다.

## V. 맺는 말 - 法制 對案의 소개

1. 우리는 한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부폐방지법등의 입법대안이 없는 대가를 특특히 치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었으면 끝났을 대부분의 일들이 미결사항이 되어 국회의 조사에 다시 맡겨지게 되는 국가적 자원의 낭비가 또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제183회 임시국회가 엊그제인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국회는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제적 개혁으로서의 부폐방지법 제정을 이번 회기에서 결단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없는 한 제2의 한보사건 발생은 필연적이다.

2. 이를 위한 법제 대안인 「腐敗防止法(안)」을 소개한다. 이는 '참여연대 맑은 사회민들기본부 정책사업단'의 주도로, 1996년 1월에 만들어져, 국회에立法請願이 되어 있다.

3. (1)立法趣旨로서는, “아직 우리가 지나지 않고 있는 부폐방지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불충분한 현재의 법제를 보완함으로써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부정부폐에 맞서기 위한 종합적인 부폐방지법이 절박하다. 부폐방지를 위한 단일법제가 법체제상 무리함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하나의 법률에 모든 부폐방지와 추방을 위한 제도들이 포함됨으로써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법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단일하고 종합적인 부정방지법이 부폐추방에 매우 효과적임을 외국의 입법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이 부폐추방을 위한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으나, 적어도 법제로서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법안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부폐예방과 추방의 제도와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한다.

(2) 부정부폐방지법 제정의 方向과 要綱에서는, ①

부폐방지법은 부폐문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내용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의 맹점을 극복한다. ③공익정보제공자등을 보호하자. ④돈세탁 구제없이 부폐는 사라질 수 없다. ⑤부정부폐의 적발과 필벌이 요구된다. ⑥각종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硬하고 독립적인 사정기관이 요구된다.

(3)主要骨子로서, 제1장 총칙, 제2장 공직자윤리 및 행동규범, 제3장 재산등록과 공개 및 심사, 제4장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제5장 돈세탁 규제, 제6장 부폐행위의 처벌, 제7장 불법재산의 몰수, 제8장 부예방지 특별수사부 등 150조 부칙3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입법 청원안을 참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 국장이 스스로가 반포에 대한 설명서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서

한보철강의 부도가 발생한 지 3주만에 몇 명의 정치인과 은행장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감하고 발표한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우리는 검찰이 사안의 핵심에 전혀 접근하지 못한 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사건을 축소하고 짜맞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강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하여 한점 의혹도 없이 한보를 둘러싼 정경유착의 실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문민정부 출범 이후 급성장한 한보그룹의 각종 사업인 허가절차 및 은행대출을 둘러싼 정치적 비호세력에 대한 의혹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검찰은 한보그룹의 정치적 비호세력으로 흥인길, 정재칠, 황병태, 권노갑 의원과 김우석 전내무장관을 지목하고 이들을 구속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한보그룹의 성장배경과 은행대출 특혜에 관여한 정치인이 위 구속자들에 그친다고 믿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더 나아가 문민정부 이후 급성장한 한보그룹의 배경에는 지난 1992년도 대선자금 조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은행대출의 특혜에 대한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바로 한보그룹의 성장배경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규명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홍인길 의원이 스스로 깃털에 불과하고 정태수 씨로부터 받은 돈도 자신을 위하여 쓴 것은 한푼도 없다고 실토했고 있는 것처럼 비호세력의 중심은 따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바로 김현철 씨가 외압의 실체라고 믿고 있고 실제 야당의원들도 그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철 씨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고 있다가 그의 저서 1만여권이 한보그룹 창고에서 발견되자 마지못해 명예훼손사건의 고소인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은 그의 한보관련에 대한 의혹을 짙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보사태의 핵심규명 차원에서 김현철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김현철 씨 외에도 한보그룹으로부터 단돈 100원이라도 받은 정치인이 있다면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정태수는 평소에 3, 40명의 정치인에게 돈을 주면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한 김덕룡 의원등 4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각 5,000만원씩 돈을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병국 중수부장은 2명에 대하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는 하편. 떡값 명목으로 받은 부분은 조사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김기수 검찰총장은 5,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이번 검찰수사 발표 내용과 결코 무관 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한보 관련 정치인의 금품수수 내역과 이에 대한 검찰의 법적 평가를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둘째,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건설시 공유수면매립허가 및 '코레스' 공법 도입승인 등 한보의 각종 사업 인허가를 둘러싼 청와대 경제수석, 재경원, 통산산업부 및 은행감독원 등 관료들의 비호에 대 학수사가 지극히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고 말았다.

77만평에 이르는 당진제철소 부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매립 면허를 받는 과정에서 관료들의 특혜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소위 코레스 공법에 대하여 포철괴는 달리 한보에 대하여만 첨단기술로 인정하여 금융세제상의 특혜를 준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인허가 과정과 관련한 감사원, 대출과 관련한 은행감독원 등 감독기관들의 부실감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한보에 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관련부처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전혀 의혹을 지적하지 아니한 점, 은행감독원이 이미 1996. 12. 초경 한보의 자금 사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 12. 말경부터 1997. 1. 중순경까지 무려 3,600억원의 구제금융 지원을 수수방관한 점, 한보철강은 지난 1. 20. 부도를 냈는데도 은행감독원이 금융결제원에 부도처리를 유보할 것을 지시, 부도어음이 3일 동안 미처리 상태로 금융결제원에 보관된 점 등 감독기관과 한보와의 사이에 모종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한 수사는 전혀 진전된 것이 없다.

넷째, 한보가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 조성 경위 및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추적수사가 있어야 한다.

한보측이 주장한 당진제철소에 대한 투자금과 당진제철소 시설투자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액과의 엄청난 차액이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정·관계 로비자금 등으로 쓰여졌음은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은행장 및 정치인의 수뢰액수는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도피한 관련자 및 계좌 추적을 통하여 나머지 비자금의 규모, 사용처에 대한 실체가 날낱이 밝혀져야 한다.

다섯째, 한보에 대하여 거액의 대출을 해준 은행들, 특히 산업은행의 전현직 총재와 외환은행장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혐의처벌을 포기한 점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부실기업에 대하여 거액의 대출을 해주고 결국 은행의 부실화를 낳은 우리 금융계의 해묵은 비리를 뿌리뽑기 위하여도 한 점의 정치적인 고려 없는 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여섯째, 한보그룹 정태수 실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예외없이 물어야 할 것이다.

정태수 씨 일가중 정태수 씨만을 구속함으로써, 검찰이 가족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보장받으려는 정태수 씨와 타협하였다는 세간의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정태수 씨 일가, 특히 정보근 씨에 대하여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의문점들 외에도 한보그룹과 관련한 의혹은 무수히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려는 검찰의 태도는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현정권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한 짜맞추기식 수사, 축소은폐 수사라고밖에 달리 결론지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수사를 납득하지 못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검찰의 태도를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한국 대중 중수부 장은 수기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강현석 씨의 이름이 주사파장에서 나온다. 1997. 2.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회장 죄 영도

##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공개서한

수 신: 검찰총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30-1

검찰은 지난 2. 19.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수사 발표를 통하여 한보사태의 본질은 자금압박을 받은 정태수 가 몇몇 정치인과 은행장 등에게 32억 5천만원을 뿐만 아니라 규정하고 돈을 주고 받은 9명만을 구속하였습니다. 선에서 수사를 사실상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은 어느 것 하나 해명이 없어 전국 아래 최대의 정경유착의 비리를 밝혀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검찰은 또다시 무참히 짓밟고 미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보사태의 본질이 정경유착, 관료부패, 금융비리, 재벌의 횡포입니다. 현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의 발로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보사태를 단한 정태수 개인의 대출비리 차원으로 축소하고 이에 맞추어 사건을 양성하게 짜맞추어 종결하려는 검찰의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며 결국은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질서유지와 정의실현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검찰이 오히려 사안의 진상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음은 심히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민변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검찰총장에게 이 서한을 드리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에 대하여 명쾌한 해명을 요구하고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한보그룹의 각종 사업인허가 및 은행대출에 관련하여 정치적인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거론된  
속칭 청태수리스트, 풍언길리스트의 명단을 공개하고, 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  
구한다.

검찰은 한보를 비호한 해심 정치인으로서 흥인길 의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인길 의원 스스로도 자신은 깃털에 불과하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받은 돈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한보를 비호한 정치인이 여러 명 있고, 또 외압의 실체가 따로 있다는 강력한 시사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검찰 발표에 따르더라도 정태수씨는 해외진출 경비만으로도 55억원, 이혼위자료로 10억원을 지출할 정도로 씀씀이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정태수 씨가 자그만치 5조 7천억원에 달

하는 특혜성 대출과 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에게 겨우 32억원만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홍인길, 황병태 의원 등 몇 명의 영향력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거액대출이 가능하였다는 설명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훌려 나온 김덕룡 의원등 4인의 5,000만원 수수설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5,000만원은 떡값에 불과하다느니, 뉴스거리도 안된다느니 하는 대검 중수부장이나 검찰총장의 발언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보사태와 관련된 정치인의 명단은 하나도 남김 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단 100원이라도 받은 정치인은 얼마를 어떤 명목에서 받았는지, 또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 이번 수사과정에서 김현철 씨의 이름이 누구에게서 거명되었는지, 또 김현철 씨가 한보그룹의 사업 인허가와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한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낱낱이 공개하라.

최병국 대검증수부장은 수사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김현철 씨의 이름이 수사과정에서 나왔는지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국민들은 한보의 정치적 비호세력의 핵심이 김현철 씨라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의 단서는 풍설이나 소문, 의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진대, 김현철 씨와 정보근과의 밀착설, 당진제철소 기공식에의 참석설이 제기되었고 김현철 씨의 저서 1만여권이 한보그룹 창고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철 씨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검찰이 다가설 수 없는 성역을 인정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김현철 씨의 한보 관련 부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고 김현철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3. 당진케철소 부지의 공유수면 매립허가, 코렉스공법 도입과정 등 한보의 각종 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첫부부처 관료에 대한 수사내용을 공개하라.

검찰은 인허가나 기술도입 과정의 비리 여부에 대하여 박재윤, 한이현, 이석채 씨 등을 비밀리에 참고인 조사를 하였으나 위법 행위나 금품이 수수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90여만평에 이르는 당진제철소 부지의 조성자체가 특혜성이 짙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의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9개월만에 일사천리로 공유수면매립허가가 나온 점, 또한 당진제철소같은 대규모 공장에는 적합치 않은 것으로 알려진 코렉스공법을 적극 추천하고 지원한 배경에는 세제상의 혜택을 보려는 한 보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는 점과, 정태수 씨의 평소 사업확장스타일에 비추어 관료들의 특혜비리가 전혀 없었다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매립 당시부터 특혜시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박재윤, 한이현, 이석채 씨에 대한 조사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4. 정태수 씨가 조성한 비자금의 총액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250억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라.

정태수 씨가 주장한 당진제철소에 대한 투자금과 당진제철소 시설투자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원의 차액만도 적계는 5천억원에서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중 많은 금액이 정관계로비자금으로 쓰여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태수 씨가 조성한 비자금은 약 2천억원에 이르며 이중 32억여원만이 뇌물과 로비자금으로 쓰여졌을 뿐이며 나머지 250억원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태수 씨가 조성한 비자금의 액수는 어떠한 조사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촉구함과 동시에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250억원의 행방에 대하여 진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 한보에 대하여 가장 많은 대출을 해준 산업은행 전현직 총재과 외환은행장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포기하고 거는 무엇인지를 공개하라.

한보에 대하여 대출 물꼬를 터준 이형구 전 산업은행 총재와 거액을 대출해 준 김시형 산업은행총재, 장명선 외환은행장 등에 대하여 조사만 하고 형사처벌을 포기한 부분은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구속된 3명의 은행장들만이 커미션을 받았다는 검찰의 설명은, 특히 한보에 대하여 대출을 여러 은행장들에게 종용한 것이 바로 산업은행 전, 현직 총재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힘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검찰 발표내용에 따르더라도 돈을 받지 않았어도 청탁을 받고 대출 지원을 해준 것은 사실인 이상 형사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사안인 것입니다. 과연 정태수 씨에게 미운 털이 박힌 은행장만 선별적으로 기소한 것이라든지, 이형구 전 총재가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폭탄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포기한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도 검찰은 왜 조사 은행장들 중 3명만을 기소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은행간통수 금융결제원 드 대출과 관련 감독기관에 대한 조사내용은 무엇인지 공개하라.

은행감독원은 1996. 12. 초경 한보의 자금사정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동이 1996년 말경부터 1997년 초까지 무려 3천여억원에 이르는 구체금융지원을 수수방관한 점, 한보철강은 지난 1. 20. 부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에 부도처리를 유보할 것을 지시, 부도어음이 3일동안 미처리 상태로 금융결제원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 감독기관의 부실감독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검찰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향후 수사계획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한보가 부도처리된 1997. 1. 23.부터 청태수씨가 검찰에 소환된 1. 30.까지 사이에 한보측의

경리장부 은닉 및 관련 핵심 참고인의 도피를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해명하라.

이미 대검은 한보의 부도를 예전하고 관련정보를 수집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 23. 부도 처리된 후 5일이 지나서야 한보계열사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고 정태수 씨를 소환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는 초동수사상의 과실 때문인지 아니면 한보사건의 비밀을 간직한 경리장부의 은닉과 관련 참고인의 도피를 방관하였다 는 세간의 비난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합니다.

8. 홍인길 의원이 청와대 총무수석 재직시에 받았다는 2억원 부분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상의 알선수재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뇌물죄를 적용하여야 하고 황병태, 정제철 의원에 대하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찰의 견해를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997. 2.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최영도

10.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number of hours worked by each employee in a company.





이 란에 기재된 글들은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의 사업이나 위원회 영역의 쟁점사항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는 '국제연대위원회' 관련 글을 게재합니다.

## 국제연대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현황 소개

한국 민족연대는 1993년 12월 15일 창립된 민족 단체로, 민족 단체로는 유일하게 국제연대 활동과 편의상 위원회 활동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 1. 주제

국제연대위원회는 민변 상임위원회 중의 하나이다. 당초 민변 특별위원회의 하나로서 그 명칭 또한 국제인권위원회였으나, 1996. 6. 제9차 정기총회에서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개편되면서 명칭도 국제연

제5회 위원회

조직 개편 이유는, 국제인권이라는 분야가 모든 인  
문야를 망라하는 특성을 띠고 있으므로 특정 분야  
의 문제를 다루는 다른 상설특별위원회와 동일선상  
에 놓는 것이 부적절하며, 또한 국제인권분야가 국내  
의 다른 인권단체들과의 상시적인 연대활동이 필수  
불가결하므로 이를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위치짓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구제역

국제전기기전회에는 지금 300명 정도의 회원이 참여하였으나 점차 위원 수가 증가하여 현재 조용환 위원장을 비롯 12명의 회원(김기중, 김병주, 김현종, 양형태, 이유정, 장완의, 정미화, 차지훈, 허경미, 한정화, 한택규)이 참여하고 있다.

2 확도

(이하 소개하는 국제연대위원회의 활동은 정확히 표현

이후 민변회원 다수가 참여하여 반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1995. 5. 보고서 심의과정에 참석하였다  
(조용환, 김선수 회원).

심의 결과 규약위원회는 [노조결성의 자유와 파업권과 관련된 법규정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특히 교사와 공무원 및 기타 집단의 노조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 최저임금제를 10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 주거대책없는 철거률을 중단할 것,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교육 접근권을 증진시킬 것,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주변계층의 복지제도를 확대할 것]등의 권고를 내렸다.

#### ㄷ. 아동권리에 대한 규약

회원 다수가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다(1995.).

## 근. 고문방지협약

우리 정부가 1995. 1.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정부는 1996. 2.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민변은 1996. 9. 이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같은 해 11. 11.~22.까지 열린 보고서 심의과정에 참석하였다(차지훈 회원).

위원회는 보고서 심의 결과 [정치적 이유로 고문 당하는 사례가 많고, 잠안재우기와 같은 가혹행위가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구금기간이 너무 길다. 신속, 공정한 조사가 보장되지 않는다. 국가보안 법은 모호한 규정이 많아 자의적 적용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고문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매우 비효율적이다] 등의 우려와, [고문의 정의 규정을 들 것. 구금시설의 감시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할 것. 민간단체의 보고서에 언급된 고문피해사례에 대한 조사 및 위원에 대한 서면보고. 구금기간 단축. 수사 기관 심문서 변호인 참여권 보장. 협약 21, 22조의 유보 철회] 등을 권고하였다.

## 2) 개인 통보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규약에 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사건을 인권  
사회에 통보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총 3건의 통보가 있은  
으로 파악되고 있는데(모두 민변 조용환 회원이 대  
인이 되어 제소함), 인권이사회는 그 중 1건에 대  
모든 심리를 마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나  
지 2건은 계류 중이다. 심리가 끝난 1건의 개요는  
음과 같다.

금호기업 노조위원장인 손종호 씨는 1991.2. 대조선 파업 당시 전국대기업노조 연대회의에 참석해 파업을 지지하고 정부의 경찰력 투입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문제되어 구속된 후 노동쟁조정법 제13조의 2 제3자개입금지 위반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991.8. 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고받았고,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된 바 있다. 이 손씨는 1992.7.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MMITTEE)에 제3항 하였다(1992.7.7 통보(communication))

이에 대해 인권이사회는 심리를 허용하고, 이후 1995. 7. 19. 손종규를 제3자개입금지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규약 19조 2항이 인정한 표현의 자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1.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인권이사회는 이사회에 제출된 사실관계가 규약 제19조 2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한다. 12. 손종규는 규약 제2조 제3조 a항에 따라 그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을 것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이사회의 견해이다. 이사회는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노동쟁의 조정법 제13조의 2를 재검

토할 것을 권고한다. 대한민국은 장래 이와 비슷한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13.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당사국은 국제규약의 위반행위가 일어났는가 여부를 결정할 이사회의 권능을 인정하였고, 국제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영토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국제규약이 인정한 권리들 보장하고 침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효과적이고 집행가능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명심하여, 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90일 안에 이사회의 견해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정보를 받기를 기대한다.)

#### 나.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한 국제인권활동

### 1) 우에 미구의 위치 기준

유엔에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 등 여섯 개 기구가 있는데, 유엔 인권위원회는 바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있는 기능위원회 중 하나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46년에 20개 위원국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직후부터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초안하는 등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위원국은 53개국이다. 참고로 우리 나라는 1991년 유

엔에 가입한 후 1993. 임기 3년의 위원국이 되었고, 이후 재선되어 1998.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었다. 한편 유엔인권위원회는 전세계의 인권문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 조사하고 종합적인 심의를 통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로서 일명 '유엔 인권총회'라고도 불리운다.

인권위원회의 중요 활동은 우선 인권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권고 및 국제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고, 또한 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가 부여한 특별과제

를 처리하는데 그 중에는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  
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아가 특정한  
주제나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실무그룹  
을 설치하거나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도 한다.

현재 주제별 특별보고관은 고문등에 관한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사법권 독립등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 인권과 비상사태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 12개 주제에 관하여 특별보고관이 선임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그 중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비드 후세인은 1996.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전 세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특히 별도로 한국과 이란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3) 제도2회 이례의 원칙에 따른 확정

제52차 인권위원회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996. 3. 18.부터 4. 26.까지 6주간 열렸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특히 위 회기 중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아비드 후세인)이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에 발맞추어, 민변에서는 3명(김선수, 한택근 회원, 김은영 간사)이 참가하였고, 여타 인권단체에서도 4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회기 중 한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배포하였고, 나아가 인권위원회 진행과정 중, 민간단체의 발언시간을 통해 총 3차례의 발언을 함으로써 한국의 인권실상 (노동기본권등 사회권, 불처벌의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을 알리는 데 노력하였다. 또한 의사표현의 자유 보고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다른 나라의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참고로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 중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둘째, 기존질서를 반대하거나 반감을 가진 정치적 견해를 가진 수감자들에게 그 견해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관행, 즉 사상전향제도를 중지하도록 하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수감된 모든 재소자는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네째, 한국정부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섯째, 한국정부는 국내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정들과 일치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여섯째, 국내사법제도가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인권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판사, 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국제인권법 적용에 관한 세미나등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구금된 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감제도 역시 사법행정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일치하도록 하라. 끝으로 한국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행정적 간섭을 제한할 것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절차를 사법절차로 대체하라.

## 다. 국제연대활동

민변의 국제연대활동은 1993. 3.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민간단체 회의와, 같은 해 6.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를 통해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특히 양 대회를 통해 한국의 국가보안법 실상을 전세계의 인권단체에 알리는 기회를 가졌고, 또 한 한국인권단체의 역량등을 인정받아 한국인권단체 협의회가 동북아시아 인권촉진팀의 주도단체로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후 민변은 기회있을 때마다 각종 국제인권회의에 회원을 파견하거나, 국제인권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으로 다른 나라 인권단체

의 연대를 공고히 해오고 있다.  
한편 민변은 1995. 11. 서울에서 '아시아, 태평양  
역에서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를 걸고 회의를  
최하여 각국의 인권단체의 대표들을 대거 초청한  
운데 성공적으로 끝마치기도 하였다.

이상의 활동 이외에도 민변은 현재 동티모르 독립  
제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상당수  
원이 동티모르 연대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 3. 현재의 활동소

국제인권위원회는 현재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기초적인 논문들을 모아 이에 관한 세미나를 함으로  
써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기본 지식 및 소양을 넓  
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2주마다 1회 개최). 또한 국  
제인권위원 중 일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정부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  
서를 준비 중에 있다(내년에 심의 예정).

나아가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대한 영문소식지 발  
간을 구상 중에 있다.

## 4. 맛음말

이상 국제연대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현재의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인권이라는 분야는 어느 특정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국내 인권문제의 전 분야를 총괄하는 분야이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할 때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대목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다행히 최근 들어 회원들의 국제연대위원회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기대해본다.

변명의무를 이행하며

신현호

능할 지경이었다. 첫 기일에 법정에 나가 소장을 진술하고 나서 재판장에게 피고에 대하여 진료경과를 밝히고, 아울러 진료기록을 번역·제출하여 주도록 명령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재판장은 즉각 피고가 그렇게 해야할 의무가 어디에 있느냐면서 거부하였다. 나는 의료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의사가 수임한 계약에 대하여 수임사건 보고의무가 민법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재판장은 그것은 피고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거부하였다. 아직 이론적인 근거가 약했던 나로서는 더 이상의 주장을 하지 못했다.

말하며, 受任事報告義務 또는 解明義務라고도 한다. 이러한 변명의무는 사후에 진료경위에 관하여 順末을 보고한다는 점에서 신체의 침습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설명의무와 구별된다. 수임인인 의사도 민법 제6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사무처리에 관하여 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치료행위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치료행위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順末을 보고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변명의무가 의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직업인들에게는 공통적으

로 있으나 절대적인 가치관인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더욱 요구된다.

이러한 의사의 변명의무는 진료경과를 전혀 알 길 없는 환자가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진료기록의 번역·제출의무이다.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은 거의 유일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측에서는 외국어로 작성되고 그나마 약자나 홀리자로 작성되어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 이를 번역하는 전문기관이 없고, 번역하는 경우에도 매우 비싼 번역료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번역·제출업무를 의사측에게 부담시키는 것만으로도 변명의무는 커다란 기능을 할 것이다. 특히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성이 의료지식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밀실성, 의료정보의 편중성, 의사의 집단이기성, 의료행위의 독점성 등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의사에게 변명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의사측에서 변명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증방해이론에 근거하여 의사에게는 환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존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나는 그후 의사에게 법적인 변명의무가 있고, 이를 해태하면 과실이 추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얼마 전 어느 지법의 B부장은 이러한 나의 주장을 받아들였는지 의사에게 진료경과를 보고하도록 발령하기 시작했다. 재판지휘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피고의사는 환자를 진찰, 검사한 결과가 어려하였는지를 시간대별로 밝히고, 그렇게 진단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제시하라고 한다. 둘째, 피고의사는 수술, 치료, 처치 등에 관하여 그의 시기, 방법, 경과 등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통하여 밝히도록 하고 있다. 투약을 하였다면 무엇을 얼마나, 왜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변론하도록 한다. 세째, 惡果가 발생한 경우 그이유는 무엇 때문으로 생각하는지를 소명하라는 것이다.

물론 이때 피고의사에게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자

백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단지 치료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 즉 몇시 몇분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고 그 때 피고의사는 어떠한 처치를 해주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등에 관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법정변론은 이러한 준비절차가 모두 끝나면 행하도록 하여 법정기일이 공전되지 않도록 하였다. 만약 피고의사는 악결과가 자기와 관계가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부장은 이러한 경과를 보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므로써 사실상 진료기록의 번역·제출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일부 피고측 변호사들은 불면 항변을 하지만 나는 변명의무의 이해가 피고의사에게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나는 환자측에서 주로 소송을 수행하지만 의사측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B부장의 소송지침에 따라 의사의 변명의무를 이해하면서 이러한 재판진행이 피고나 피고소송대리인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첫째 피고인 의사의 실체적인 진실을 먼저 적극적으로 밝힘으로써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환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변론주의 원칙상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가 과실없음을 항변하게 되는데, 이 때쯤 되면 의사은 환자측으로부터 그동안 무엇인가 증거를 조작하였다거나 숨기고 있다는 등의 같은 불신을 받게 된다. 또는 의사의 소극적으로 대응으로 환자측에서의 엉뚱한 주장으로 의학적으로는 한 마디로 무식한 판결이 선고되는 예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판결은 의사나 환자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한 마디로 없느니만 못한 판결이 선고되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다. 의사가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진료경과를 밝힘으로써 이러한 여러 불이익을 상당히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장점은 의료계의 신뢰회복이다. 의사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의사에게 두 번

씩 당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의사의 과실행위로 한번 피해를 입고, 소송을 하면서 의료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당한다는 생각이다. 돈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진료경과의 확인이다. 대개의 의료행위는 환자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모른다. 후에 사고가 나면 진료경과를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그 결과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의사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여부를 떠나서 우선 병원을 점거·농성하고,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을 별다른 죄책감없이 행하게 되었다. 그 부작용으로 병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방어진료가 보편화되고, 산부인과 의원은 분만실을 없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이르렀다. 피해를 당한 의사은 평생의 업을 폐업하고, 음식점이나 노래방을 경영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국가적인 손실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의사들이 변명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되면 최소한 억울하게 당했다는 상대적인 소외감은 줄일 수 있다.

둘째, 피고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논점이 정리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여 재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나는 의사측으로부터 피고사건을 맡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이 너무 많아 번역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첫 기일에乙호증으로 번역하여 제출한다. 그리고 객관적인 진료경과를 가능한 자세히 밝힌다. 그럼으로써 의료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갖게 되는 사건부담률을 떨어뜨리는 반사적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아직 일부 피고의사측 소송대리인이 제출하는 불성실한 진료경과보고를 보면서 우리의 업무 역량을 우리 스스로 넓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것이 변호사 대량배출시기에 있어서 삶의 지혜 중 하나가 아닐까?